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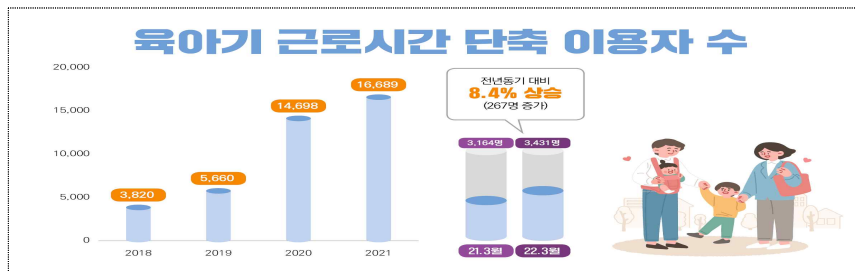
- 2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2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는 16,689명으로 전년(14,698명) 대비 13.5% 증가했다.

*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조회 수급자 기준으로 집계
(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되지 않음)

- 여성 근로자는 15,057명으로 전년(13,059명) 대비 15.2% 증가했고, 남성 근로자는 1,632명으로 전년(1,639명) 대비 소폭 감소(△0.4%)했다.
- '22년 1분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3,431명으로 전년(3,164명) 대비 8.4%(+ 267명) 증가했다.



-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규모기업은 5,615명으로 전년(5,286명) 대비 6.2% 증가했고,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11,074명으로 전년(9,412명) 대비 17.6% 증가하여 대규모기업에 비해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2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은 9.3개월로 전년(8.9개월) 대비 0.4개월 늘어났다.

- 여성 근로자는 9.4개월로 전년(9.1개월) 대비 0.3개월, 남성 근로자는 8.5개월로 전년(7.7개월) 대비 0.8개월이 증가했으며, 상대적으로 남성 근로자들의 사용기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7~8세)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전체 사용자의 29.7%)했고, 그다음으로 2세 자녀를 위해 사용하는 비율(23.9%)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되고,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는 등 육아휴직 근로자를 위한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다.”라고 밝히면서,

-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01 부담없이 육아휴직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급여 인상

지원 대상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지원 수준 통상임금 80% (최대 1년)
(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

인부모 육아휴직 급여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은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를 지원

02 엄마도! 아빠도! 함께 육아휴직!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지원 대상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지원 수준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상향하여 지급

- 육 3개월 + 어 3개월: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육 2개월 + 어 2개월: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육 1개월 + 어 1개월: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부모 각각 최대 750만원 지원(첫번째 달 200 + 두번째 달 250 + 세번째 달 300만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22.12.31까지 한시 운영)
L,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를 지급

03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도!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지원 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 수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월 30만원 지원(최대 1년)

특전 근로자 자녀 생후 12개월 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허용 시, 사업주에게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월 200만원씩 지원(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사에도 적용)

신청·문의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 고용센터(☎1350) 방문 및 우편 신청

1 육아휴직

○ 전체 육아휴직자 수

(단위: 명)

연도	구분	인원	
		남성	여성
2016년		89,771	7,616
2017년		90,110	12,042
2018년		99,198	17,665
2019년		105,165	22,297
2020년		112,040	27,423
2021년		110,555	29,041
2021.3월		25,672	6,359
2022.3월		29,344	7,993

※ 출처: 고용보험 전산망

○ 대규모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육아휴직자 수

(단위: 명,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대규모 기업 (비중)	51,236 (48.7)	38,635 (46.7)	12,601 (56.5)	52,154 (46.5)	37,384 (44.2)	14,770 (53.8)	51,982 (47.0)	35,706 (43.8)	16,276 (66.1)
우선지원 대상기업 (비중)	53,929 (51.3)	44,233 (53.3)	9,696 (43.5)	59,886 (53.5)	47,233 (55.8)	12,653 (46.2)	58,573 (53.0)	45,808 (56.2)	12,765 (43.9)
합계	105,165	82,868	22,297	112,040	84,617	27,423	110,555	81,514	29,041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업

(단위: 명, %)

구분	2021.3월			2022.3월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대규모 기업 (비중)	11,883 (46.3)	8,467 (43.8)	3,416 (66.1)	13,046 (44.5)	8,751 (41.0)	4,295 (53.7)
우선지원 대상기업 (비중)	13,789 (53.7)	10,846 (56.2)	2,943 (43.9)	16,298 (55.5)	12,600 (59.0)	3,698 (46.3)
합계	25,672	19,313	6,359	29,344	21,351	7,993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현황

○ 전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

(단위: 명)

연도	구분	인원	
		남성	여성
2016년		2,761	378
2017년		2,821	321
2018년		3,820	550
2019년		5,660	742
2020년		14,698	1,639
2021년		16,689	1,632
	2021.3월	3,164	374
	2022.3월	3,431	395

○ 기업 규모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

(단위: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1.3월	2022.3월
대규모기업	1,598	5,286	5,615	1,072	1,222
우선지원대상기업	4,062	9,412	11,074	2,092	2,209
합계	5,660	14,698	16,689	3,164	3,431